

PCSD 보고자료
'02.4.26 14:30

DMZ · 접경지역 생태계보전대책

2002. 4. 26.

환 경 부
자 연 보 전 국

목 차

1. DMZ 및 접경지역 개황
2.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·지리적 특성
3. DMZ 및 접경지역의 여건변화 및 예상문제점
4.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대책
 - 가. 생태적 가치와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구분·관리
 - 나.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
 - 다. 남북협력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대책
 - 라. 친환경적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

1. DMZ 및 접경지역 개황

- DMZ는 한반도에서 자연생태계가 단절되지 않고 동서로 연결된 유일한 지역
 - 폭 4km, 길이 250km, 면적 907.3km²로서 한반도 전체면적(약 22만km²)의 0.45%, 여의도 면적(8.8km²)의 110여배
 - 전체면적의 75%가 임야이고, 시야확보를 목적으로 식생을 제거한 초지는 20%, 농경지는 약 2%정도 차지

〈참고 : 비무장지대의 유래 및 성격〉

- ◇ DMZ는 한국전쟁이 1953.7.27 종전된 후 UN 총사령관을 일방으로,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지원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휴전협정 체결에 따라 성립
- ◇ 협정규정에 의하여 양측은 각각 2km씩 후퇴하여 DMZ를 설정하고 휴전협정을 관리·감독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
- ◇ DMZ는 남북한 각각의 단독 영토로는 인정되지 않는 지역임
 - 즉, 그 통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행사하고 영유권은 남북한이 공유(共有)하는 특수한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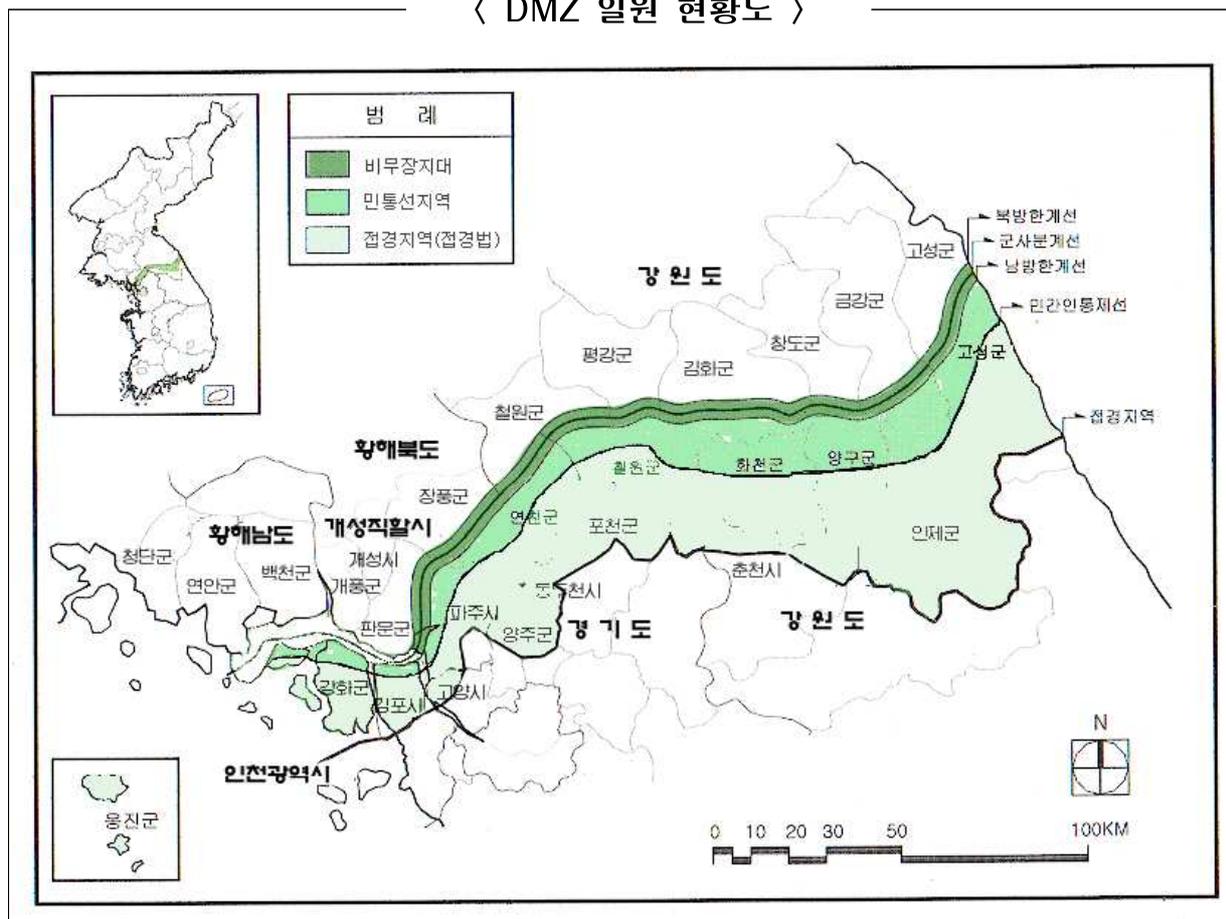
- DMZ의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~20km 사이에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(약 1,369.6km²)이 설정되어 농업 등 1차 산업이 허용

- 민통선 지역은 도로와 공장 등의 분포가 거의 없고 농지를 제외한 인공생태계의 비율도 낮아 우수한 자연성을 유지하며
- 멸종위기 또는 희귀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매우 뛰어나

□ 민통선 이남으로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(약 8,097km²) 이 설정되어 있으며

- 현재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전제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정주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 중
- 인천시·경기도·강원도의 3개 시·도 98개 읍·면·동이 해당

〈 DMZ 일원 현황도 〉



2.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· 지리적 특징

□ 생물다양성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지역

- 최근의 극히 제한된 조사에서도 1,900여종의 동·식물 및 152종의 희귀 동·식물이 발견되어 뛰어난 생태적 가치 입증
- 앞으로 세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생태적 가치가 더욱 뛰어난 지역임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

<DMZ 및 접경지역 중 생태계가 특히 우수한 지역>

지역	생태적 특징
향로봉 주변	·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으며 남한의 설악산 국립공원과 북한의 금강산을 잇는 생태통로(Eco-corridor)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
대암산 · 두타연	· 독특한 생물상과 생태를 나타내는 고층습원(용늪)이 위치하고 있으며 두타연 일대는 남한내에서 최대 열목어 서식지임
철원평야지대	· 고지대에 위치한 평야지대로서 철새 등 야생조류가 많이 서식하며 전세계 두루미의 약 10%가 월동하여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잘 알려진 곳임

- 백두대간 및 도서연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반도의 3대 핵심 자연 생태축으로서의 기능 수행

□ 수십년 동안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진 특이한 지역

- DMZ는 50여년간 민간인 출입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과거 논이나 취락지역 등이 자연 스스로 천이(遷移)과정을 거쳐 습지 등으로 생태적 복원이 일어난 지역임
 - 이러한 자연상태의 복원현상은 어느 나라도 그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며 UNESCO 및 생태계 전문가의 관심 증대
- 이 지역의 복원사례를 면밀히 조사·연구하여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의 모델로 적용 가능

□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는 지역

- DMZ와 접경지역은 동·식물의 보고로서 영구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
 - 지금까지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이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
- 따라서, 이 지역은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방안이 동시에 수립·시행되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는 곳임

□ 전세계적인 생태적 평화지대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

- DMZ는 50년 동안의 대치관계 속에서 남북간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곳으로서
- 남북한이 동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합의할 경우 군사적 대치지역이 생태적 평화지역으로 전환된다는 상징성을 갖게 됨

3. DMZ · 접경지역의 여건변화 및 예상 문제점

□ 남북교류협력의 전초지역으로서 입지적 중요성 부상

- 경의선 철도 및 남북연결도로 등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주요거점으로 발전
- 판문점, 금강산 등 동북아 관광거점 및 남북협력의 교두보로 발전예상

□ 남북협력사업 확대 및 접경지역 지원강화로 개발가속화 우려

-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
 - 이산가족 면회소 및 남북교류 배후단지 조성추진 등
-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지역주민 개발욕구 분출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계획중에 있어 접경지역의 난개발 초래 가능성
 - 현재 3개 시·도에서 수립중인 접경지역 계획도 보전보다는 산업단지,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수립 중

□ 자연생태계 보전 관련 남북교류 · 협의 창구 부재

-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생태계 보전관련 의제는 경제협력 및 이산가족 등의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
- 이에따라, DMZ 일원에 대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사업도 조속히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전망

4.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대책

가. 생태적 가치와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구분·관리

- DMZ와 인접지역의 생물지리적 특성 및 생태자연도를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
- 생태계 우수지역은 보전위주로 관리하고 기타지역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

□ 자연유보지역 : DMZ

- 생태적 가치와 분단의 역사성·상징성이 큰 지역으로서 영구 보존하여 생태 및 통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

*자연환경보전법에서 통일 후 2년간은 자연유보지역으로서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토록 규정(법 제2조, 제28조)

□ 보전권역 : 민통선 이북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중심

- DMZ와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된 지역으로서 보호야생동식물 서식지,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, 자연경관 우수지역 등
-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발대상지역에서 배제

□ 준보전권역 :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중심

- 보전지역의 완충역할, 가급적 개발대상지역에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연환경 복원·복구대책 병행 추진
- 생태관광, 교육·연구 등 생태계 훼손이 최소화되는 행위만 허용

□ 정비권역 :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 중심

- 선계획-후개발 원칙에 따라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
- 국토통합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철저히 수행
- ※ 민북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 생태자연도 완성(2002.4월 인터넷 게재,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는 2004년 예정)

나.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

□ 생물권보전지역(Biosphere Reserve) 개요

- 유네스코에서 생물다양성 보전,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가치 유지를 위해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
 - 현재 세계적으로 94개국 411개 지역이 지정됨
 - 한반도에서는 설악산('82)과 백두산('89)이 현재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은 금년상반기 지정신청 예정
 - 2개국 이상에 걸쳐 지정된 『접경생물권보전지역(Trans-boundary Biosphere Reserve, TBR)』은 5개소
-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국제적인 의무사항은 없으며, 국내법에 의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 관리

□ 그간 추진상황

- 관계부처·민간단체·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 구성('01.2),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 세부추진계획 확정('01.4)
- 유네스코 관계관(Han Qunli) 방북('01.5.22~29), 한국 MAB 위원장 명의의 제안서신을 북한 MAB 위원장에 송부(4.30), 유네스코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북측관계자와 의견교환(9.6~9.13), 유네스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담당자(Dr. Habel)와 추진방향 협의(10.30)
-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식에 관한 관계전문가 회의('02.2.8)
-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(KEI, '01.6.1~'02.3.31) 추진

□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식

- 남북합의에 의해 처음부터 공동지정하는 방안으로 추진
 - 북측과 합의 이전 남측비무장지대 우선지정 추진은 생태계 조사의 어려움, 정전협정 위반문제, 군사전략상의 문제(비무장지대에서의 맞불, 시계청소의 어려움) 등 복잡한 문제 야기
- DMZ, 민통선이북지역 및 이남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 추진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관하여 북한과의 합의를 앞당길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 강구
 - 정부간의 공식적인 접촉 외에도 민간분야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민간단체 지원 및 협조(계속)
 - 제3국에서 유네스코 주관의 남북 관계자 회의 개최 추진 (2002 상반기)
 - 남북회담시 경제협력 의제와 연계 상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(계속)
- 남북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
 -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·관리에 관한 마스터 플랜 수립 (2002.5월)
 - 권역별 구분기준 설정, 각 권역별 토지이용 계획,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·협력사업 발굴 등
 - DMZ 인접지역 생태계 현황자료 종합정리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2002.6월)
 -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,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제고 및 참여분위기 확산(계속)

다. 남북 협력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대책

□ 경의선 도로·철도연결사업 관련 생태계 보전대책

- 그간 관계전문가로 조사단(16명)을 구성, 생태계 조사 실시 (2000.9)
 - 지형·지질, 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해 7차례 조사
- 관계부처 합동의 DMZ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(2001.2)
 - 도로·철도 연결지역 습지보호를 위해 아치형 교량을 설치하고, 중·소형 야생동물 이동통로 및 대형동물 이동통로용 생태터널 설치 등
- 향후 공동조사단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추가적인 생태계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공에 반영하고, 사업완료 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(완료 후 2년간)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□ 동해선 철도연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 생태계 보전대책

- 금강산 육로관광 예정지역(강원도 고성군 송현리~북방한계선) 생태계조사(2001.10.15~10.20) 및 조사보고서 발간 (2002.2)
 - 14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형·지질, 식생 등 8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
-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적 보호가치가 큰 지역에는 고가로 설치하거나 생태터널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

라. 친환경적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

□ 수립배경 및 추진상황

-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인천시·경기도·강원도의 3개 접경지역에 대한 10년간의 장기종합계획 수립 의무화
 - 접경지역지원법은 낙후된 지역발전, 자연환경보전,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0.1월 의원발의로 제정
-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은 인천시·경기도·강원도 중 낙후지역으로서 주로 민통선 이남지역이 대상임
 - 민통선 이북지역도 농업생산지역, 집단취락지역 등 일부 포함
- 현재 시·도에서 시·도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중이며, 향후 행자부에서 이를 종합, 관계부처 협의 후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 예정(2002.7월)

□ 접경지역계획에 대한 환경부 협의방향

-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자연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수립 유도
 - 대규모 관광단지, 신도시 및 산업단지 건설사업 등은 배제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중점 고려
-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규개발 확대보다는 기존취락·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·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 유도
-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, 시민단체, 유관기관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난개발 방지